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5월 1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여성가족부  
장 이 정 옥

● 법률 제1728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를 “제15조까지의”로,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란 피해아동·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5조 중 “상대방이나 피해자가”를 “피해자가”로, “보호·선도·교육”을 “보호·지원·교육”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를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를 “피해아동·청소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를 “피해아동·청소년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지원”을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으로 한다.

제38조 앞의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을 삭제한다.

제38조의 제목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상아동·청소년”을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으로, “보호 및 재활을”을 “보호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로,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제2호”를 “제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대상아동·청소년의”를 각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6. 아동·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에 대한 교육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교육·상담 및 지원

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프로그램 운영
  6.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 ④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장부터 제7장까지를 각각 제4장부터 제6장까지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제5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제60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부를”로,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를 “일부를”로 하고”로 한다.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해아동·청소년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6호).

나. 대상아동·청소년의 정의 규정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7호,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제13조제3항 신설).

라.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제20조제3항제1호).

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38조).

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호).

<법제처 제공>